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

제출년월일 : 1998년 10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개정이유

- 외환위기 이후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여 임대주택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기 위함

주요골자

-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세감면 범위 확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의 경우, 현재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 대하여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에서

⇒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 기타 조문의 보완·정리

현행 조문의 내용을 주민이나 세무공무원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 정리함

조 례(안) : 별 첨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기타 참고자료 : 별 첨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건축한 후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임대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월(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